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9299      |
| 의 퇴 인 | 김성원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| 2026. 7. 15. |
| 추계번호  | 26C2946      |

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37조의2<br>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 | (제1항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<u>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</u>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<br>※(현행법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제3항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주 5일 이상 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제4항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인력이 급식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 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 비용을 보조하거나, 필요한 위생 및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제5항) 경로당에 지원된 냉난방 비용 등 보조금 중 절감된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또는 여가·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37조의2<br>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주 5일 이상 급식 제공을 위하여 양곡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, 급식지원

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하며, 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 비용을 보조하거나, 필요한 위생 및 안전 교육을 지원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또한, 경로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절감하여 결산에 따른 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경상이전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경로당의 주 5일 이상 급식 제공을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로당의 수와 필요 비용의 규모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  -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 및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고,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등을 통하여 경로당에 대한 급식지원인력도 일부 지원하고 있음
    - 2026년 경로당의 식사제공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에 편성된 예산은 총 1,656억원으로 조사됨

[표 1] 2026년 기준 경로당 급식제공 관련 지원 예산

| (단위: 억원)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| 합 계   | 양곡비 지원<br>(국고보조사업) | 부식비 지원<br>(지방이양사업) |
| 합 계      | 1,656 | 396                | 1,260              |
| 국비       | 190   | 190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|
| 지방비      | 1,466 | 206                | 1,260              |

자료: 보건복지부

-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1일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함
  - 보건복지부 보도자료<sup>1)</sup>에 따르면, 2024년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 대해 양곡비,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하여 주 5일 식사를 제공하고,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힘

1) 보건복지부(보도자료), “경로당에 중앙-지자체 협업으로 5월 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”, 2025.5.1.

-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2025년 9월 기준 전국의 경로당 약 7만개에서 주당 평균 3.6일의 식사를 제공

[표 2] 전국 경로당의 주당 평균 식사 제공 현황

| 시·도 | 경로당 수(개) | 제공횟수  | 시·도 | 경로당 수(개) | 제공횟수  |
|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|
| 전국  | 69,724   | 주3.6회 | 경기  | 10,432   | 주3.2회 |
| 서울  | 3,648    | 주3.9회 | 강원  | 3,369    | 주3.7회 |
| 부산  | 2,427    | 주3.4회 | 충북  | 4,298    | 주3.8회 |
| 대구  | 1,856    | 주3.6회 | 충남  | 5,973    | 주3.2회 |
| 인천  | 1,585    | 주3.5회 | 전북  | 6,956    | 주3.9회 |
| 광주  | 1,391    | 주4.2회 | 전남  | 9,256    | 주3.6회 |
| 대전  | 868      | 주3.1회 | 경북  | 8,165    | 주4.0회 |
| 울산  | 862      | 주3.2회 | 경남  | 7,639    | 주3.8회 |
| 세종  | 525      | 주3.5회 | 제주  | 474      | 주1.5회 |

주: 2025년 9월 기준

자료: 보건복지부

-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로당에 세부 항목의 구분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 급식 제공 목적을 위한 비용(양곡비, 부식비, 관련 인건비 등)과 그 외의 비용 구분이 모호하므로, 급식 제공일 확대 시 발생할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또한, 개정안 시행 시 경로당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보조금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부재함

- 안 제37조의2제5항은 경로당의 절감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와 규모, 절차 등을 알 수 없음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## 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☐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김우림 | 문지은 |

☐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|
| 김우림 | 02-6788-3738 | wrkim@nabo.go.kr |